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Study for Improvement and Critical Issues Analysis in the Law for the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변 완 희*
(Wan-Hee Byun)

요 약

정부는 u-City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쟁점들, 다시 말해 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공공기관 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재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쟁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Abstract

National government established a new law to solve the problems and to support u-City project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ome issues which are a lack of the contents on national plan, connecting restriction among the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 shortage of funds.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s these issues, and proposed some ideas to solve them.

Key words: Ubiquitous computing, ubiquitous city, u-city national master plan, u-city funds

I. 서 론

현재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u-City 관련 사업 및 R&D 과제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 부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지자체 역시 u-City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u-City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부재, u-City사업의 부처별, 지자체별로 산발적 추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u-City

지원 대책 부재, 개별사업법의 상충, u-City 담당 기관의 부재 등으로 시행 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각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u-City 사업이 난립하고 있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총체적 계획 부재로 중복투자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u-City법’)을 제정하였

* 주저자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논문접수일 : 2009년 3월 24일

† 논문심사일 : 2009년 5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28일

고[1], 이 법을 통해 u-City 활성화를 위한 조직, 사업 체계, 예산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u-City법’은 여전히 종합계획의 단위수립주기, 수립 기구, 수립 내용의 보완, 개별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통신망간의 연계, 재원마련 대책의 미흡이 지적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u-City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법 개정 시에 추가 및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u-City법’의 개요

1. ‘u-City법’의 필요성

<표 1>은 u-City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법·제도, 전략, 조직, 운영관리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2]. 법·제도 측면에서는 정보 보호, 민간참여, 도시개발사업자의 시행근거 등과 관

련된 법적 장치가 없고, 개별 법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국가전략 측면에서는 u-City 추진전략의 부재, 재원대책의 부재 등의 문제. 조직 측면에서는 사업주체의 협의 채널, 운영관리 조직의 부재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8년 3월 ‘u-City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u-City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본계획, 사업절차, 조직, 재원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 ‘u-City법’의 구성

‘u-City법’은 <표 2>와 같이 크게 5개의 장과 부칙을 포함하여 총 2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담고 있다. ‘제2장 u-City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가 기본 계획으로서의 종합계획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제3장 u-City건설사업의 시행 등’에서는 u-City 사업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담고 있다. ‘제4장 u-City 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에서는 준공검사, 사업계획 승인에 있어서의 특례 및 공공시설의 귀속, 관리운영, 융합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다루고 있다. ‘제5장 u-City 위원회 등’에서는 u-City 위원회와 협의체, 재원, 연구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표 1> u-City 추진에 따른 문제점
<Table 1> Problems in u-Cities

분류	내용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에 관한 제도적 기반 미흡 ○ 민간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흡 ○ 관련 개별 사업법의 한계 ○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u-City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택지개발지구 또는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도시개발사업자가 u-City를 건설할 법적 근거 부재 ○ u-City 관리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국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u-City 추진 계획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ity 국가전략과 실천 계획의 부재로 기존 정보화 추진 방향과 차별성이 결여 ○ 각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u-City에 대한 통합·조정 제도적 장치 부재 ○ u-City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 부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간 업무 협의 채널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내 협의 채널의 부재로 사업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이 지연 ○ u-City 관리 및 운영 조직의 부재

III. 주요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종합계획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안

1) 종합계획의 내용

‘u-City법’ 제4조는 u-City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표 2> ‘u-City법’의 구성
<Table 2> Structure of the law

법의 구성	기 본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제2조 : 정의
	제3조 : 적용대상
제2장 u-City 종합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 u-City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 공청회의 개최
	제6조 : 종합계획의 확정
	제7조 : 종합계획의 변경
	제8조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3장 u-City 건설 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승인
	제11조 :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변경
	제12조 : 사업시행자
	제13조 : u-City 건설사업계획
	제14조 : u-City 건설사업 실시계획
제4장 u-City 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15조 : u-City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제16조 : 준공검사
	제17조 : 사업계획 승인 등의 특례
	제18조 : 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 : u-City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20조 : 융합기술의 기준
	제21조 : 개인정보 보호
제5장 u-City 위원회 등	제22조 : u-City 기반시설의 보호
	제23조 : u-City 위원회
	제24조 : u-City 사업협의회
	제25조 : 보조 또는 융자
	제26조 : 연구개발 등
	제27조 : 전문 인력의 양성
부칙	제28조 : 유비쿼터스 시범도시의 지정 등
	제1조 : 시행일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와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주요쟁점

종합계획은 u-City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으로 u-City와 관련된 포괄적인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표 3>과 같은 사항들이 쟁점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3) 종합계획의 수립내용 보완

먼저, 국토종합계획, ITS 국가기본계획,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유사 계획들을 검토하여 종합계획이 담아야 할 기본사항들을 점검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검토[3]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공간적 질서를 수립하고 국토개발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설정하는 종합적 공공계획으로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하고 있다. <표 4>는 국토종합계획의

<표 3> 종합계획의 주요쟁점
<Table 3> Issues of the u-City national master plan

쟁점사항	내용
종합계획 수립내용의 보완	종합계획의 목표, 표준화, 국가 및 사회의 중요이슈 등의 사항이 제시되지 않음
단위 수립기간의 변경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대부분의 도시 관련계획이 10년이어서 계획의 불일치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
수립을 위한 실무조직 필요	종합계획을 작성할 실무조직이 없음. 시행령 제8조 3항에 전문위원회를 통해 조사, 연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임. 이 전문위원회만으로 각 부처의 계획을 받아 반영하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됨

내용 중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2)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차원의 기본계획을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의거하

<표 4> 국토종합계획 수립내용

<Table 4> Multiple purpose development plan of the land

내용	종합계획 관련*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표시를 하였다.

<표 5>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내용

<Table 5> National plan for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내용	종합계획 관련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목표 및 추진전략	-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원	○
기타 교통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여 수립한다 [4]. <표 5>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종합계획이 반영하고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3)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정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고, 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다 [5]. <표 6>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내용 중에서 종합계획이 반영하고 있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고 있다.

상기 계획들을 검토한 결과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내용

<Table 6> National plan for promotion into the informational society

내용	종합계획 관련
정보화촉진 등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
산업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
재정·금융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
교육·연구·과학기술·환경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
지역·문화·생활 기타 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및 지적소유권 보호와 정보통신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정보화촉진 등을 위한 법령·제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등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정보화촉진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관한 사항	-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국가 기본계획으로서의 목표와 전략
- 국가 및 지역발전, 지역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항
- 기술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 최근 국가, 사회적 이슈인 환경과 노약자에 대한 사항
- u-City 서비스 통합에 필요한 상호연계와 관련된 사항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보완해야 할 내용을 <표 7>에 제시한다.)

4) 단위 수립주기의 조정

매년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며, 첨단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종합계획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u-City법’ 제4조는 종합계획의 단위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IT 관련 계획인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은

단위 수립 주기가 5년이고[6], 국토종합계획은 20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있다 [7, 8]. 이런 이유로 수립단위인 5년이 적합한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u-City는 정보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므로 종합계획은 정보화의 속도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하는 첨단정보통신 기술변화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도시 관련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 또는 20년이라는 기간은 유연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이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IT기술 역시 개발되고 상용화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뿐더러 도시기본계획이나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한 수립기간을 갖지 않을 경우 국토 차원의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8> 관련 계획의 단위 수립 주기
<Table 8> Establishment cycles for national master plans

<표 7> 종합계획 보완내용
<Table 7> Supplements of u-City national master plan

연번	보완내용	비고
1	u-City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u-City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시행령
3	u-City를 통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u-City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유비쿼터스 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시행령
6	유비쿼터스 도시의 기술 및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시행령
7	u-City의 상호 연계 및 체계적 정비에 관한 사항	
8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u-City 서비스에 관한 사항	
9	u-City 기반시설 및 u-City 서비스의 도시 간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단위 수립 주기
국토기본법 제7조	③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그 수립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8조	①시·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①정부는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①정부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표 7>에서 2, 5, 6번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표 9> 종합계획 ‘수립단위’에 개선안
 <Table 9> New establishment cycle of u-City national master plan

현행 법안	개선안
제4조(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4조(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IT 기술의 현격한 발전 등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따라서 종합계획은 <표 9>와 같이 주택종합계획과 같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기술(IT)의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5) 실무 조직의 구성

종합계획의 수립방안은 ‘u-City법’ 제4조2항2)과 3항3)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항에 따르면 종합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u-City는 관련된 부처가 많아, 국토해양부 단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타 부처의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게다가, ‘u-City법’에서도 종합계획을 최종 심의하는 u-City 위원회와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있을 뿐 별도의 실무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부처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u-City 위원회 조직 내에 각 부처 및 민간단체 등이 포함된 실무기구가 필요

-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3) 국토해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표 10>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기구의 업무내용
 <Table 10> Working group for u-City national master plan

조직의 위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City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실무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계획의 작성 • ‘u-City법’의 개정작업 • u-City 도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검토 • 타법률과의 의제처리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등

하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인 정보화추진위원회는 국민총리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와 10개의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통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고 있으며, 통신위원회는 6개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u-City 위원회 내에 실무기구를 두어 종합계획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개정작업,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u-City 도시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검토, 타 법률과의 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2. 자가통신망의 설치한계와 개선사항

1) 주요쟁점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통신망)는 공공기관 간(예, 경찰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상호연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 이로 인해 도시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어 도시 기능과 서비스를 상호연계하고, 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u-City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자가통신망 설치에 대한 이와 같은 제약은 결국 임대통신망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ITS와 같은 단일사업이 아닌 u-City 사업을 통해 수행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ITS를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자가통신

망이나 임대통신망 모두를 고려할 수 있는 반면, u-City 사업을 통해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통신망 외에 다른 대안이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본 법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보화촉진기본법(제29조)에는 “정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정부법(제26조)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전기통신기본법(제21조) 조차 예외적인 경우를 두어 공공기관간의 자가통신망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⁴⁾

2)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바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기관의 자가통신망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 11>에서 제

<표 11> 자가통신망 설치 한계와 개선방안
<Table 11> Problems and solutions in private communication network

개선방안	법 적용(안)
전기통신법 제21조 1항의 예외 사항으로 u-City를 추가	(전기통신법 제21조 1항 3호) 3. u-City의 효율적인 운영과 u-City 서비스의 공공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u-City법’ 제9조(u-City 건설 사업 등)에 자가통신망 상호연계를 허용하는 항을 추가	(u-City법’ 제9조 4항) ④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u-City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u-City서비스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상호간 연계할 수 있다.

- 4)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중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시하고 있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서 u-City를 예외사항이 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u-City법’에 전기통신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통신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3. u-City 재원확보 방안

1) 주요쟁점

현 ‘u-City법’은 재원으로서는 보조 또는 용자⁵⁾ 외에 u-City 사업을 위한 별도의 재원 대책이 부재하다. 이것만으로는 u-City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재원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u-City법’에 의하면 u-City 기반시설 역시 도시 기반시설로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원 체계를 검토하여 u-City 재원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 관련 재원체제로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활용이 가능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재원의 적극적인 유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의 검토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유지 확보, 기반시설 비용에 대한 출연, 보조, 용자, 조사연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용도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에 대한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 국가 귀속분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5) 제25조 (보조 또는 용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나. 기반시설의 설치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등에 드는 비용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용도
 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한 해 대략 1조원 규모로서 국가귀속분 3000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고, 지자체 귀속분 7000억원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사용된다 [10].

(2) 도시계획세의 검토

도시계획세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징수하고 있다. 도시계획세 수입현황을 몇몇 도시를 통해 살펴보면 작게는 화성시의 10억에서 많게는 인천광역시의 311억 원에 이른다. 도시계획세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별회계로 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기금으로 10%, ‘주차장법’에 의해 10%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50%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다.⑥

(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검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정부 출연금,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 기금 규모는 2006년 기준 약 2700억원으로 수입은 주로 민간출연금, 융자회수금, 정부예금회수, 경상이전수입, 기금운용수익금, 공자기금예탁회수금, 유가

6)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8조 (도시계획세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표 12> 지자체 도시계획세 세입 현황[11]
 <Table 12> Town planning taxes of the local government

[단위: 천원]

구분	시	부과액	징수액	도시개발법
수도권	용인시	21,256,506	20,393,550	10,196,775
	수원시	26,576,406	25,637,391	12,818,696
	화성시	2,180,349	2,093,082	1,046,541
	파주시	3,264,368	3,101,831	1,550,916
	성남시	27,530,054	26,406,088	13,203,044
	인천광역시	66,448,453	62,224,137	31,112,069
비수도권	아산시	2,638,373	2,486,646	1,243,323
	전주시	12,956,483	12,277,507	6,138,754
	부산광역시	98,540,207	94,256,660	4,712,830
	광주광역시	34,104,417	31,659,619	15,829,810
	대전광역시	35,716,955	34,274,855	17,137,428

증권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지출은 주로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금, 정보통신 인력양성 사업 지원금, 정보통신표준화 지원금, 정보통신 연구기반 조성 지원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12].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살펴본 바와 같이 IT 기술 개발, 표준개발 지원, 인력양성에 활용하고 있고, 이는 u-City 기술, 인력과 크게 다르지 않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의 제2조 1호에 따르면 u-City 기반시설 역시 민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민투법은 BTL(Build Transfer Lease), BTO(Build Transfer Operation), BOO(Build Own Operate)등 다양한 적용 모델이 있으므로 복잡한 사업구조를 갖는 u-City 사업에도 맞춤형 사업모델이 가능하다.

민투법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2조 8호에 의거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제21조 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통해 u-City 기반시설의 투자비 보존 및 정상적 운영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1) 정부 및 지자체 재원의 활용

u-City 기반시설은 도시기반시설에 포함되므로 앞서 살펴보았던 기반시설 부담금과 도시계획세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정보통신기금의 사용용도 역시 u-City 기술개발, 표준화 및 인력양성 등이 IT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3>은 u-City에 지원 가능한 재원을 국가에서 설치하는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특별회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 민간재원의 활용

u-City 사업의 활성화와 자원마련을 위해서는 민투법의 적극적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투자는 창의적이고 민간 경영기법의 적용, 정부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u-City 수익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할만한 비즈니스 모델은 담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은 민투법 내의 부대사업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끄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u-City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시행 가능한 부대사업은 민투법 제21조 1항에 제시되어 있는데 특히 11호의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u-City 통합운영센터 설치를 이들 시설 내에 위치케 하고 시설운영 수익을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3> u-City 재원의 구성
<Table 13> Structure of u-City funds

구분	국가 (기금)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구성	기반시설 부담금 국가 귀속분	정보통신진흥기금	도시 계획세
사용 용도	국가 u-City 사업 및 시범사업	u-City 관련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	지자체 u-City 사업	지자체 u-City 사업

IV. 결 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의 중앙부처,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지자체에서 u-City 사업을 계획 혹은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u-City법'의 제정으로 사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역시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종합계획 내용 및 절차의 보완 필요성, 기관 혹은 서비스간의 자가통신망 연계 불가, 자원 마련 대책 미흡 등이 여전히 u-City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런 쟁점사항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면밀히 검토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계획 수립 내용의 보완, 둘째,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자가통신망 설치의 제약 완화, 셋째, 재원으로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성 검토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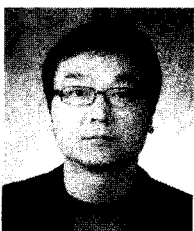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안들은 u-City 사업의 발전을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혹은 법의 재개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1] 법제처,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 4.
- [2] 국토해양부, u-City 건설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pp. 15-50, 2007. 1.
- [3] 법제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9. 1.
- [4] 법제처, 교통체계효율화법, 2009. 1.
- [5] 법제처, 정보화촉진기본법, 2009. 1.
- [6] 법제처,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2009. 1.
- [7] 법제처, 국토기본법, 2009. 1.
- [8] 법제처, 주택법, 2009. 2.
- [9] 법제처, 전기통신기본법, 2009. 1.

- [10]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및 재정계획 (안)*, pp. 4, 2006.
- [1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연감*, 2005.
- [12] 정보통신부, *2006년도 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2005.

저자소개



변 완 희 (Byun, Wan-Hee)

1992년 2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공학사)
1996년 2월 아주대학교 교통공학과 (공학석사)
2004년 1월 Kyoto대학 도시사회공학 (교통공학전공) (공학박사)
2003년 8월 ~ 2006년 4월 : 한국IBM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소 실장
2006년 5월 ~ 현재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